

'97년도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 주요업무계획

다음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의 '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다.

제 1 장 '96년도 업무추진실적

가.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

-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
 - 한국통신의 주식 8.83% 매각('96.10~12)
 - 정부보유지분 80% → 71.17%

○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 추진

- 개인휴대통신 등 7개 사업분야에 27개 사업자 선정('96.6)

〈표〉역무별 통신사업자현황

역 무	기존사업자	신 규 사 업 자	사업자 수
시내전화	한국통신	-	1
시외전화	한국통신, 데이콤	-	2
국제전화	한국통신, 데이콤	은세통신	3
이동통신	한국이동통신, 신세기통신	-	2
개인휴대통신	-	한국통신, LG텔레콤, 한솔PCS	3
주파수 공용통신	한국TRS (전국)	아남(전국), 지역5	7
무선데이터통신	-	한컴텔레콤, 에어미디어, 인택크텔레콤	3
무선호출	한국이동통신, 지역 10개	해피텔레콤(수도권)	12
발신전용 휴대전화	-	한국통신(전국), 지역10	11
회선설비 임대	한국통신, 데이콤	두루넷, 지앤지텔레콤	4

나.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조성

-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에 관한 제도 개선('96.5)
 - 「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」, 「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」으로 이원화하여 세부적, 명시적으로 규정
 - 서비스간 내부거래 명시 및 지역별 회계분리 의무화 등
- 설비제공조건 및 요금산정기준 개정('96.12)
 -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투명한 설비제공절차 도입
 - 합리적 원가에 기초한 설비제공대가 정산체제 정립 등
 - 설비제공대상에 관로·선로·회선외에 국사 상면을 포함
 - 설비제공대가의 현실화(직접비→직접비+일반관리비)

다. 통신요금의 조정

- 이동전화요금
 - 설비비 폐지 등 요금체계 조정('96.2)
 - 설비비 폐지, 설비비 상환액 7,039억원
 - 보증금제도 신설 및 가입비 현실화

- 기본료와 통화료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
- 평균 6.2% 요금인하
- 경쟁도입에 따른 지속적인 요금인하
 - 신세기통신 : 통화료 20% 인하('96.9)
 - 한국이동통신('96.12)
 - * 이용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요금제 도입
 - * 평균 12.6% 요금인하
- 무선통신요금
 - 장애인에 대한 무선통신요금 감면('96.6)
 - 감면대상 : 보건복지부와 보건처에 등록된 장애인, 장애인단체, 장애인 복지시설
 - 감면내용 : 월 기본사용료의 20% 감액
 - 무선통신 가입보증금 감면('96.10)
 - 감면대상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입후 2년이상 경과자 등
 - 감면내용 : 가입보증금 전액 또는 반액
- 시내,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 등
 - 시내요금은 소폭 인상하고 시외·국제요금은 대폭 인하하여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('96.12)
 - 시내전화(인접 및 30km포함) 4%인상(3분당 40원 → 41원 60전)
 - 시외전화(31km 이상) 10% 인하, 국민부담경감 △1,994억원
 - 국제전화 15% 인하, 국민부담경감 △1,258억원
 - 114안내 유료화('97.1 시행)
 -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월 3회 초과이용시 1통화당 80원 부과
- PC통신용 전화요금 조정('96.12)
 - 청소년층 이용자의 요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할인폭을 확대(30→35%)하고 다량이용자에 대하여는 추가할인(최고 15%)

제 2 장 '97년도 주요업무계획

I. 정보통신사업 경쟁 활성화

1.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 개선

가. 배 경

- 급변하는 통신시장환경 및 기술발전 추세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민간의 통신사업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국내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공고방식의 허가제도를 개선

나. 추진내용

- '9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허가제도개선
 -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하고 허가의 시기, 허가신청요령 및 세부심사기준 등 고시
 -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고시안 마련
 - 기간통신사업의 가허가제 및 승인제 도입
 - 통신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간통신사업을 가허가하거나 기존 전기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또는 전기통신기술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승인하는 제도 시행
 -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추가등 변경허가절차 마련
- '97. 2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후 전면적인 경쟁체제에 대비하여 통신사업법령 개정
 - 재판매사업의 범적지위·허가방안 등 통신사업체계 및 허가제도 개선
 - 유·무선 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등 정비

다. 추진일정

- '97. 1 :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
- '97. 2 : 시행
- '97. 3/4 :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

2. 기간통신사업자 신규허가 추진

가. 배 경

-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 통신사업의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“선 국내경쟁, 후 국제경쟁”의 원칙하에 시내전화역 무등 국내경쟁이 필요한 부분의 허가를 지속적으로 추진

나. 추진방향

- 다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통신사업의 저변확대
- 지역사업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우선참여 유도
- 공정하고 적절한 경쟁여건 조성

다. 허가대상역무

- 시내전화, 시외전화
- 지역TRS(대전·충남지역, 충북지역, 전북지역, 강원지역), 무선호출
- 해저광케이블, 위성회선사업

라. 추진일정

- '97. 1/4분기 : 허가대상역무 및 사업자 수 검토·확정
- '97 : 허가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

3. 번호안내사업 경쟁도입 추진

가. 배 경

- 한국통신 독점체제에 따른 서비스 불친절 및 경영의 비효율성 초래
- 경쟁도입을 통하여 과다한 인력소요 부문에 조속한 자동화 기술개발 유도

나. 추진내용

- 번호안내사업자의 법적 지위 마련
 - 부가통신사업으로서의 신고제 등 자유로운 시장진입 허용
- 안내정보제공 관련 법령정비
 - 번호 DB 공개 및 제공대가 산정방식 등 기준 마련
 - 안내정보의 무분별한 유출방지를 위한 활용범위 설정 및 관계법령 검토
- 번호안내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

다. 추진일정

- '97. 3 : 외국사례 조사·분석
- '97. 5 : 번호안내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- '97. 10 : 관련제도 정비
 - ※ 진입예상기업에서는 최소 1~2년의 준비기간 요청

4. 신규통신사업 지원 강화

가. 목 적

-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통신사업자의 사업기반 조기정착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

나. 추진내용

- 신규통신사업지원협의회 및 실무추진반 운영 활성화
 - 정부, 민간업체 및 관련 연구기관별로 신규통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분담 및 활동 강화
 - 서비스별 실무추진반 회의를 매월 정례화하여 신규통신사업 애로해소 센터로 활용
- 신규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
 - 신규통신사업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규제사항을 조사하여 완화하는 방안 검토
 - *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, 기지국 설치지역 제한 완화 등
- 기존·신규통신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체제 강화
 - 기지국 공용화 등 통신설비 공동사용, 유통망 공동활용 등 사업자간 상호연대 협력 강화
 - 공정경쟁 및 사전 분쟁조정을 위한 활동 지원

다. 추진일정

- '97. 1 ~ : 신규통신사업지원협의회·실무추진반 회의 정례 개최
- '97. 3 ~ 6 : 신규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실태 조사
- '97. 7 ~ 9 : 관계기관 협의 및 규제완화 방안 강구

II. 정보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조성

1.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강화

가. 배 경

-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구축, 통신시장의 대외개방 등에 따라 공정 경쟁 환경의 조성이 시급
- 통신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확충,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보강 등을 통하여 시장경쟁 기능 활성화

나. 추진내용

- 통신위원회의 기능 활성화
 - 통신사업자 지원·관리차원에서 통신위원회의 분쟁해결기능 강화
 - 공정경쟁저해행위에 관한 통신위원회 직권조사 및 사업자 신고 활성화
-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
 - 설비제공, 상호접속, 정보제공 등에 관한 부당한 차별, 협정체결거부 및 타사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등 규정
 -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후 고시
-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계획서 이행 강화
 - '96. 6월 선정된 신규사업자의 공정경쟁계획서 이행 점검
 - '97년중 허가할 신규사업자에게도 공정경쟁계획서 이행의무 부과
-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강구
 - 위반사실 공표, 손해배상
 - 불공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

다. 추진일정

- '97. 1 : 고시안 수립
- '97. 2 :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마련
- '97. 3 : 통신위원회 심의
- '97. 4 : 고시·시행

2. 통신사업 원가검증 및 관련제도 개선

가. 추진배경

- 통신사업의 정밀한 원가검증을 통하여 이용요금 및 접속료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기반 조성

나. 추진방향

- 원가 검증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객관적인 검증반 구성
- '97년 3월 제출 예정인 기간통신사업자의 '96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비용·자산·수익의 적정성 등 검증
- 원가검증을 통하여 원가검증 및 회계관련제도의 개선사항 발굴

다. 추진계획

- '97. 3 : 원가검증 계획수립
- '97. 4 : 검증기관 선정 및 검증반 구성
- '97. 5 : 현지실사 및 원가검증 실시
- '97. 11 : 검증결과 공표 및 회계제도 개선사항 발굴

3.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개정

가. 배 경

- 현행 상호접속기준은 KMT 등 한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KT시내망 중심으로 되어 있어
- 통신사업 경쟁 확대에 따른 다수사업자에 대한 적용한계

나. 추진내용

- 사업자간 공정한 상호접속을 하기 위한 일반 원칙 규정
 - 통신서비스 유형에 따른 접속체계
 - 접속유형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원칙 등
- 경쟁사업자간 동등접속 실현을 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
 - 접속료 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원가검증 의무화
 - 사업자의 통신망간 합리적인 접속점 설정
- KT 시내전화사업의 적자보전방식 개선
 - KT 시외, 이동통신, 데이콤 등 사업자가 보전하는 한국통신의 시내 적자범위 재검토
 - 사업자간 객관적인 비용분담기준 설정

-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 - 가입자정보 등의 제공범위와 제공방법, 대가 산정방법의 구체화

다. 추진일정

- '97. 3 : 개정(안) 작성
- '97. 5 :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
- '97. 6 : 개정(안) 확정 및 고시

4.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기준 고시

가. 배 경

- 통신사업의 경쟁확대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
- 신규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구성을 지원하고 사업자간의 중복투자방지 및 설비의 공동사용으로 통신사업 활성화 유도

나. 추진내용

-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이용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
- 공동사용 대상 전기통신설비 및 범위 규정
- 공동사용 설비의 사용기간, 조건 및 협의절차 규정
- 공동사용설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 비용 산정규정

다. 추진일정

- '97. 1 : 고시(안)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- '97. 2 : 확정 · 시행

5. 정보통신번호자원 관리의 효율화

가. 목 적

- 신규서비스 및 사업자 출현, 남북통일 대비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번호관리체계 구축

나. 추진내용

- 시외전화 지역번호광역화 방안 강구
 - 광역화에 따른 이용자혼란 및 사회적 비용최소화 방안 모색
 - 통일이후 북한지역번호 부여방안 마련
- 특수번호(1XX 계열) 관리체계 개선

- 수요가 급증하는 공익용 특수번호에 대한 자원 확보

- 각 용도별 특수번호의 통합조정 방안 검토

-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형서비스 출현에 대비한 수요예측 및 번호부여 방안 검토

다. 추진일정

- '97. 3 : 특수번호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및 지역번호광역화 관련 공청회 개최
- '97. 4 :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안 작성
- '97. 5 :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
- '97. 6 : 번호관리세칙 개정안 확정 · 시행

6. 시외전화 식별번호 사전등록제 시행

가. 배 경

- 경쟁사업자간 동등접속 실현을 통한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국통신, (주)데이콤의 시외전화 식별번호 사전등록제 시행

나. 추진내용

- 사전등록을 위한 기반조성
 - 시내교환기 기능보완 및 타인명의 가입자의 실명화 추진
- 사전등록 · 변경절차의 간소화 및 객관성 확보 방안 강구
 - 미국, 호주 등 사전등록 시행국가들의 사례 조사 · 분석
 - 가입자들이 시외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
 - 사전등록제를 운용하는 시내전화망의 중립성 확보
 - 사전등록에 따른 기술개발비용 등의 분담방안 강구

다. 추진일정

- '97. 4 : 교환기 기능개발
- '97. 6~7 : 가입자번호등록 시험
- '97. 8 : 사전등록 시행

7.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

가. 배 경

-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전면적인 대외개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신서비스의 고도화·다양화 및 이용자 수용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재정립 필요
- 통신사업 경쟁확대와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조화 필요

나. 추진내용

- 보편적 서비스 관련규정의 명문화·체계화 추진
 -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, 범위 및 적용대상 사업자 등
 - 일반전화 → 멀티미디어통신, 이동전화 등
 - 기간통신사업자 → 재판매사업자 등
- 수혜대상지역 및 수혜대상자 등
- 경쟁촉진정책과 균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정책방향 수립
 -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단계적인 확대방안 강구
 -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비용산정,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검토

다. 추진일정

- '97. 7 :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방안 수립
 - 산·학·연·관 등으로 전담반 구성
 - 미국, 유럽, 일본 등 외국의 제도 분석
- '97. 9 : 관련법령 개정 추진

Ⅲ. 한국통신 경쟁력 강화

〈생 략〉

Ⅳ. 정보통신 규제완화 및 국민편익 증진

1. 정보통신관련 규제완화

가. 배 경

- 정보통신관련 기업 및 이용자 등에 대한 정부와

사업자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·완화·개선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통신이용편익을 증진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추진방침

- 현행 정보통신관련 규제전반에 관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
 -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적은 것은 폐지
 -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
 - 필요한 규제는 사업자나 이용자가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
- 지속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 발굴 및 완화 추진
 - 하이텔·천리안 등 PC통신에 「정보통신 규제완화대상신고」란을 개설, 정보통신관련 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규제완화 대상과제 상시 접수
 -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소비자, 관련업계, 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「정보통신 규제완화 추진반」을 두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추진

다. 추진내용

- 이용약관의 인가·신고기준 재정립 및 처리절차 정비 등
 - 기간통신역무중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인가대상 규정
- 중요통신설비 설치승인제도 개선
 - 중요통신설비 설치승인제를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를 규정하여 고시
-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위탁범위 확대
 -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만으로 업무위탁 허용
 -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의 범위규정
- 국제전기통신업무 협정 등에 관한 승인제도 개선
 -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신속히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승인대상을 승인 및 신고대상으로 이원화
- 전기통신공사업 제도개선

- 수시허가제도 도입, 업종 및 등급의 단순화
-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시공관리 강화방안 마련

라. 추진일정

- '97. 1 :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안 마련
- '97. 2 : 시행
- '97 하반기 : 전기통신공사사업법 개정 추진

2. 정보통신 요금규제제도 개선

가. 목 적

- 통신시장의 경쟁확대에 부응하여 사업자의 요금 결정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요금규제제도 정립
- 통신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

나. 추진내용

- 요금결정 자율성 확대
 - 사전인가에서 공정경쟁여건 조성차원의 사후 규제로 전환
 - 사전인가대상의 경우 경쟁현황,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
- 요금규제의 투명성 제고
 - 신고·인가시 접수절차, 처리기간 및 대상역무 등의 명확화로 행정의 예측성 제고
 -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이용자 그룹의 의견수렴 절차 확립
- 이용자 중심의 요금제도 도입 유도
 - 정액제 등 선택요금제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용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요금상품의 개발 유도

다. 추진일정

- '97. 4 : 이용약관 인가 대상역무 고시
- '97. 6 : 외국사례조사 분석
- '97. 10 : 요금원가산정기준 및 가격상한제 도입방안 등 마련

3. 정보통신서비스 품질개선

가. 목 적

- 자율적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 요구 반영 체제를 확립하여 양질의 서비스확보와 시장개방에 따른 대외적응력 제고

나. 추진내용

- 품질경쟁 기반 조성
 -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내에 통신서비스 품질연구반 구성
 - 역무별 사업자들간 자율적으로 품질지표, 기준 연구
 - 외국 통신서비스와의 비교 분석
 - 소비자보호원등 신뢰성있는 기관과 공동 품질평가 추진
 - 품질개선을 년차적으로 지속 추진
 - 1차년도('97) : 품질지표개발
 - 2차년도('98) : 품질만족도 평가
 - 3차년도('99) : 품질기준공시 및 보상제도 도입
- 이용자 요구사항 수렴을 통한 품질 향상
 - 실태조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
 - 신규서비스 개발 및 시장 적응력 제고에 활용
 - 조사결과를 품질지표 및 만족도 평가에 반영하는 FEED BACK 시스템 구축
 - 정보통신 이용자 모니터제 도입방안 검토

다. 추진일정

- '97. 1/4 : 품질연구반 구성
이용실태조사 전담반 구성
- '97 2/4 : 실태조사 실시
- '97. 3/4 : 실태조사 결과 분석
품질지표 개발
- '97. 4/4 : '97년도 결과 보고서 작성, 발간
품질만족도 평가 계획 수립

